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18 |
|----------|----|

발의년월일 : 2010년 8월 2일

발의자 : 운영위원장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이며, 남북간 첨예한 대립은 서울시민의 안위·복지, 그리고 서울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에

저해가 되는 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내실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헌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국내사회도 안보 불안감과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따른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남북간 침해한 대립은 서울시민의 안위·복지, 그리고 서울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에 저해가 되는 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2010.5.24)에서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서울시도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규정을 통해 서울시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북한의 주민은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내실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10. 8. 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